

2014. 12. 9.(화)

제336회 정례회

심 사 보 고 서

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목 차

I. 심사경과	1
II. 전문위원 검토보고	2
1. 기금총괄	2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	3
(1) 수입	3
(2) 지출	4
3. 기금조성 규모	5
III. 질의·답변요지	9
IV. 심사결과	9
V. 소수의견 요지	9
VI. 기타 필요한 사항	9

심 사 보 고 서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4. 11. 5.

2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3. 회부일자 : 2014. 12. 1.

4. 상정일자 : 2014. 12. 1. ~ 12. 3.

○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2014. 12. 1.(월)

- 청소년육성기금, 여성발전기금, 통합관리기금, 자활기금
사회복지기금, 식품진흥기금,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

○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2014. 12. 2.(화)

- 남북교류협력기금, 체육진흥기금, 투자진흥기금,
중소기업육성기금,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

○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2014. 12. 3.(수)

- 재난관리기금, 환경보전기금
-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

II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의회운영전문위원 이홍신)

1. 기금총괄 (※ 상임위 순)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설치근거)	설치 년도	2015년 계획안	2014년 계획	비교증감	증감율 %
계(14개기금)		130,109,246	144,067,995	-13,958,749	-9.69
청소년육성기금 (여성정책관실) -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	'79	57,545	66,333	-8,788	-13.25
여성발전기금 (여성정책관실) - 충청북도여성정책기본조례	'98	1,001,246	497,478	503,768	101.26
통합관리기금 (예산담당관실)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	'07	23,702,979	29,776,579	-6,073,600	-20.40
지방채상환기금 (예산담당관실) * 폐지 -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	'04	0	2,558	-2,558	-100.00
자활기금 (복지정책과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	'00	179,704	286,470	-106,766	-37.27
사회복지기금 (복지정책과) -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	'01	3,712,264	4,067,852	-355,588	-8.74
식품진흥기금 (식품의약품안전과) -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	'89	3,068,988	4,675,336	-1,606,348	-34.36
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(충북도립대학) - 충북도립대학운영에관한조례	'98	1,222,082	1,363,666	-141,584	-10.38
남북교류협력기금 (자치행정과) -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조례	'12	547,497	325,840	221,657	68.03
체육진흥기금 (체육진흥과) - 지방자치법 제142조	'10	577,167	587,270	-10,103	-1.72
투자진흥기금 (기업유치지원과) - 충청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	'06	18,534	7,228,233	-7,209,699	-99.74
중소기업육성기금 (기업유치지원과) -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	'94	71,325,460	72,516,184	-1,190,724	-1.64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(농업기술원) -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	'81	6,463,517	6,141,575	321,942	5.24
재난관리기금 (치수방재과) 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	'05	6,030,515	6,964,189	-933,674	-13.41
환경보전기금 (환경정책과) -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	'07	12,201,748	9,568,432	2,633,316	27.52

※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간 만료('04년~'14년)로 인해 충청북도조례·규칙심의회(11. 28)를 거쳐 12월 정례회 기간중 기금폐지 안건 상정 → 기금잔액은 일반회계(임시적 세외수입) 귀속

-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9억 5,874만 9천원(△9.7%) 감액된 1,301억 924만 6천원임.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(1) 수입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수입계획									
	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수	예탁금 원금회수	예치금 회수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
합계	130,109,246	7,953,000	0	0	25,857,468	14,733,332	65,123,408	4,794,394	5,682,923	5,964,721
청소년 육성기금	57,545	0	0	0	0	0	38,927	0	17,518	1,100
여성발전 기금	1,001,246	500,000	0	0	0	0	388,692	0	112,554	0
통합관리 기금	23,702,979	0	0	0	0	14,733,332	1,880,514	4,794,394	2,294,739	0
자활기금	179,704	0	0	0	134,970	0	11,274	0	33,460	0
사회복지 기금	3,712,264	550,000	0	0	0	0	2,766,704	0	395,060	500
식품진흥 기금	3,068,988	0	0	0	547,493	0	1,995,538	0	347,836	178,121
충북도립 대학 장학기금	1,222,082	160,000	0	0	0	0	21,082	0	1,000	1,040,000
남북교류 협력기금	547,497	500,000	0	0	0	0	25,840	0	21,657	0
체육진흥 기금	577,167	500,000	0	0	0	0	34,300	0	42,867	0
투자진흥 기금	18,534	0	0	0	0	0	18,248	0	286	0
중소기업 육성기금	71,325,460	0	0	0	25,175,005	0	44,901,553	0	1,248,902	0
농촌전문 인력육성 기금	6,463,517	300,000	0	0	0	0	5,987,517	0	171,000	5,000
재난관리 기금	6,030,515	5,443,000	0	0	0	0	76,742	0	510,773	0
환경보전 기금	12,201,748	0	0	0	0	0	6,976,477	0	485,271	4,740,000

(2) 지출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지 출 계 획									
	계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인력 운영비	기본 경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 금리 상환	예수 금리 상환	기타 지출
합 계	130,109,246	8,452,775	47,800,000	0	0	24,794,394	47,377,483	0	1,674,594	10,000
청 소 년 육성기금	57,545	18,000	0	0	0	30,000	9,545	0	0	0
여성발전 기금	1,001,246	91,600	0	0	0	800,000	109,646	0	0	0
통합관리 기금	23,702,979	0	0	0	0	20,000,000	2,028,385	0	1,674,594	0
자활기금	179,704	77,000	100,000	0	0	0	2,704	0	0	0
사회복지 기금	3,712,264	330,500	0	0	0	550,000	2,831,764	0	0	0
식품진흥 기금	3,068,988	632,160	700,000	0	0	1,000,000	726,828	0	0	10,000
충북도립 대학 장학기금	1,222,082	1,200,000	0	0	0	0	22,082	0	0	0
남북교류 협력기금	547,497	0	0	0	0	540,000	7,497	0	0	0
체육진흥 기금	577,167	0	0	0	0	577,060	107	0	0	0
투자진흥 기금	18,534	0	0	0	0	0	18,534	0	0	0
중소기업 육성기금	71,325,460	0	47,000,000	0	0	0	24,325,460	0	0	0
농촌전문 인력 육성기금	6,463,517	153,900	0	0	0	0	6,309,617	0	0	0
재난관리 기금	6,030,515	3,708,615	0	0	0	820,000	1,501,900	0	0	0
환경보전 기금	12,201,748	2,241,000	0	0	0	477,334	9,483,414	0	0	0

3. 기금조성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별	2014년도말 조성액 ^(a)	2015년도 기금운용계획		2015년도말 조성액 ($d=a+b-c$)	증 감 ($e=d-a$)
		수입 ^(b)	지출 ^(c)		
합 계	229,134,045	50,252,506	57,937,369	221,449,182	-7,684,863
청소년육성기금	878,927	18,618	18,000	879,545	618
여성발전기금	6,089,792	612,554	91,600	6,610,746	520,954
통합관리기금	84,613,847	7,089,133	1,674,594	90,028,386	5,414,539
자활기금	1,587,044	168,430	177,000	1,578,474	-8,570
사회복지기금	21,365,029	945,560	330,500	21,980,089	615,060
식품진흥기금	10,540,538	1,073,450	1,342,160	10,271,828	-268,710
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	21,082	1,201,000	1,200,000	22,082	1,000
남북교류협력기금	1,066,840	521,657	0	1,588,497	521,657
체육진흥기금	2,110,206	542,867	0	2,653,073	542,867
투자진흥기금	18,248	286	0	18,534	286
중소기업육성기금	44,901,553	26,423,907	47,000,000	24,325,460	-20,576,093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5,987,517	476,000	153,900	6,309,617	322,100
재난관리기금	23,454,279	5,953,773	3,708,615	25,699,437	2,245,158
환경보전기금	26,499,143	5,225,271	2,241,000	29,483,414	2,984,271

○ 14종 기금의 성질별 규모는

- 수입분야는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51억 2,340만 8천원(50.1%), 용자금 회수 258억 5,746만 8천원(19.9%), 예탁금 원금회수 147억 3,333만 2천원(11.3%), 전입금 79억 5,300만원(6.1%) 등으로 전체 수입의 87.4%를 차지하고 있음.
- 지출분야는 용자성사업비 478억원(36.7%), 금융기관예치금이 473억 7,748만 3천원(36.4%), 예탁금 247억 9,439만 4천원(19.1%)으로 전체 지출의 92.2%를 점유.

<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 >

(단위 : 천원)

수 입			지 출		
구 분	편 성 액	%	구 분	편 성 액	%
합 계	130,109,246	100	합 계	130,109,246	100
전 입 금	7,953,000	6.11	비용자성 사업비	8,452,775	6.50
보 조 금	0	0.00	용자성 사업비	47,800,000	36.74
차 입 금	0	0.00	인 력 운 영 비	0	0.00
용자금 회수	25,857,468	19.87	기 본 경 비	0	0.00
예탁금 원금회수	14,733,332	11.32	예 탁 금	24,794,394	19.06
예치금 회수	65,123,408	50.05	예 치 금	47,377,483	36.41
예 수 금	4,794,394	3.68	차입금원리금 상환	0	0.00
이 자 수 입	5,682,923	4.37	예수금원리금 상환	1,674,594	1.29
기 타 수 입	5,964,721	4.58	기 타 지 출	10,000	0.01

4.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

- ▶ 청소년육성기금은 1979년에 설치되었으나 '09년 2억원 출연을 마지막으로 조성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'15년도 장학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7백만원(△28.0%) 감액이 되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, 20억원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▶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금이 해마다 감소('13 : 150백만원, '14년도 : 110백만원, '15년도 : 92백만원)하는 사유와 지원기준 및 사업선정 심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▶ 통합관리기금은 '07년도에 설치하여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가 되었으나, 예수금이 전년도 보다 35억원이 감소(△42.2%) 되었던 바,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예수금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- ▶ 자활기금 중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(4,800만원), 자활근로자 교육(1,600만원)의 사업 효과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자금 대여사업의 선정기준과 대여금 회수 등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▶ 사회복지기금은 매년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, '15년말 기금조성액 대비 '15년도 고유목적 사업비의 비율이 1.5%에 불과하여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애인·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이 필요함.
- ▶ 식품진흥기금 중 신규로 계상된 외식문화개선 활성화, 음식점 개방형 주방개선 사업과 '13년도 집행율이 저조(56%)한 시설개선용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이 필요함.
- ▶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별도의 적립금 없이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도비 출연금과 기성회계 등에서 전입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▶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 미수립 상태임.
- ▶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(순세계잉여금의 3% 이내)으로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조례에 따라 10년간 매년 20억원씩 출연하여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, '11년~'15년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연하여 '15년도말 조성액이 26억 5천만원으로 조성목표액 달성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▶ 투자진흥기금은 분양·임대용 토지매입이 완료된 제천2산단(19억원), 보은·단양산단(각 15억원), 영동군 개별입지(23억원) 등 총 72억원과 감정평가 등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'14년도 연말까지 집행한 후 집행잔액 1,853만 4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여건

조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,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의 향후 기업유치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- ▶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사유와 '15년도말 현재 융자금 미회수채권 738억원에 대한 회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.
- ▶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여유자금 63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사유와 5개 농업인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내역과 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함.
- ▶ 재난관리기금 중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(5.6억원)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충청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('13년 12억원, '14년 8억원, '15년 3억원)을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▶ 환경보전기금은 조성목표액(200억원)을 달성하여 '14년도말 기준으로 265억원이 조성되었으나,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외에는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연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함.

○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평

- ▶ 청소년육성기금, 충청도립대학장학기금의 경우 적립금액이 적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이 교착상태인 관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▶ 사회복지기금, 환경보전기금,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▶ 중소기업육성기금,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음에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※ '15년 통합관리기금 : 예수금 42.2% 감소, 이자수입 16.4% 감소

- ▶ 따라서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, 적립금액이 적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Ⅲ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Ⅳ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Ⅴ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Ⅵ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